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측량성과(지도) 국외 반출 시
데이터센터 설치 이행 요건 명시 등》

■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46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제2210846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기본측량성과(지도) 국외 반출 시 이행 요건 명시 등 (안 제16조제4항·제5항 신설 및 제6항)	3

I.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제2210846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안규백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6. 16.

다. 회 부 일 : 2025. 6.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간정보의 국외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는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임.

한편, 구글 등 국외기업이 지속적으로 국내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향후 관세 협상 등의 이유로 지도 국외반출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법률에 미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건들을 명시하여 국가안보 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외기업이 국내법상 필요한 보안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5항 신설 등).

3. 검토의견

가. 기본측량성과(지도) 국외 반출 시 이행 요건 명시 등
(안 제16조제4항·제5항 신설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 ③ (생략)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할 수 있다.
<u><신설></u>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국외로 반출하는 기본측량성과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하의 지도로 한정하고,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본측량성과를 저장·관리하는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를 국내에 설치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의 이행을 완료할 것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u>자격기준</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 ----- <u>자격기준, 제4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u> 등에----- -----.
⑤ (생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1)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도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등에 따르면, ‘기본측량’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¹⁾이고,

‘기본측량성과’는 기본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결과²⁾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³⁾ 및 정밀도로지도⁴⁾ 등 정밀지도의 근간이 되는 측량성과임.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반인은 기본측량성과를 열람·복제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음⁵⁾.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8.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2)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법에 정의된 바를 따른다.

1. “기본측량성과”는 기본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결과를 말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으로 제작된 것
2.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밀도로지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한다.

따라 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 내용이 같은 항 각 호⁶⁾의 경우, 즉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이하 “공개 제한 사유”라 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을 복제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이에 더하여,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는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같은 조 제1항⁷⁾은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⁸⁾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복제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을 복제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없다.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후단 생략)

또한, 같은 조 제2항 본문⁹⁾은 누구든지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공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같은 항 단서¹⁰⁾에 따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이하 “국외 반출 협의체”라 함)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 가능함.

종전의 「공간정보관리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어 2015. 6. 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은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공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이러한 국외 반출 금지 규제로 인해 해외의 지도제작업체가 국내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국내지명의 표기가 잘못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세계적으로 호환될 수 있는 지도 등의 공간정보서비스 출시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어려워지는 등 국내 지리정보서비스(GIS¹¹⁾)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¹²⁾에 따라,

2014년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14. 6. 3. 개정, 2015. 6. 4. 시행)을 통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외 반출 협의체의 협의·검토를 거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16조제2항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음.

이와 같은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금지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국토지리정보원예규) 및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국토지리정보원예규)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상의 법령 등을 종합하면, 기본측량성과(지도등, 사진 또는 그 밖의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이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개최하여 허가 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허가 신청 건 중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위원회가 국외 반출 협의체를 통한 국외 반출 결정이 필요하다고 심사·의결

11)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1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07342호)에 대한 검토보고서 참고

한 사안의 경우, 해당 신청 건은 ‘국외 반출 협의체’에 상정되어 해당 협의체의 검토·협의를 거쳐 국외 반출 여부가 결정되게 됨.

〈표 1〉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제도

구분	내용
적용 대상	◦ <u>기본측량성과</u> 및 <u>공공측량성과</u>(이하 “공공측량성과”라 한다) 중 <u>측량용 사진</u> ◦ <u>기본측량성과</u> 및 <u>공공측량성과</u> 등을 사용하여 <u>간행한 지도등</u> ◦ <u>기본측량성과</u> 및 <u>공공측량성과</u>를 <u>활용</u>(편집, 가공, 추출 등)한 지도 등의 <u>공간정보</u>
심사 절차	①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신청 ②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신청 접수 ③ 관련 부서 또는 관계 기관 의견 조회 ④ 국토지리정보원 <u>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u> 개최 및 심사 ↓ 법 제14조제3항 중 <u>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u> ④-1 “<u>국외 반출 협의체</u>”를 통해 허가 여부 결정 ⑤ 심사 결과 통보
국외 반출 협의체 협의사항	협의체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협의 ①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② 국익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③ 부처별 소관 사무 및 정책에 관련되는 사항 ④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안은 이와 같은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제도와 관련하여 ‘국외 반출 협의체’의 운영 방식 및 허가 요건 등을 보완·개편하려는 것으로, 국외 반출 협의체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제4항 신설),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축척 2만5천분의 1 이하의 지도까지만 반출이 가능하도록 허용 범위를 제한함과 아울러,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요건을 부과하며(안 제6조제5항 신설),

안 제16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개정).

(2) 국외 반출 협의체에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 부여

(안 제6조제4항 및 제6항)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는 국외 반출 협의체의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조 제4항¹³⁾은 국외 반출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함)에도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국외 반출 협의체의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음. 해당 규정 제12조제1항¹⁴⁾에 따르면 국외 반출 협의체의 간사¹⁵⁾는 구성원발언 요지 및 회의결과 등 일정 사항을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국토지리정보원예규)

제12조(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는 서면심의 결과에 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 2. 출석구성원 성명 / 3. 회의 진행사항
4. 구성원발언 요지 / 5. 회의결과 /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같은 규정 제6조제1항¹⁶⁾의 회의 비공개 원칙에 근거하여 해당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외 반출 협의체는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안보의 관점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기구로서 해당 협의체의 결정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라는 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여부는 국가안보는 물론 증강현실, 자율주행 및 드론운행 등 미래 신산업의 육성 및 보호와도 연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외 반출 협의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에 규정된 국외 반출 협의체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같은 규정에 따른 회의 비공개 원칙과 달리 회의록 공개 원칙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안보 등 국익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되며,

15)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국토지리정보원예규)

제11조(간사) 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5급 공무원으로 한다.

16)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국토지리정보원예규)

제6조(회의 비공개) ① 협의체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17)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감정보 보호, 국외 반출 협의체 내 자유로운 의견 교환 보장 및 의사결정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등의 균형을 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표 2〉 개정안에 따른 국외 반출 협의체의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

구분	현행법 및 시행령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개정안
회의록 작성	미규정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 의무적 작성·보관·관리 (서면심의의 경우 서면심의 결과로 같음) ① 회의일시 및 장소 ② 출석구성원 성명 ③ 회의 진행사항 ④ 구성원발언 요지 ⑤ 회의결과 ⑥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록 의무 작성 ※ 회의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회의록 공개	미규정	회의 <u>비공개</u>	회의록 의무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

국토교통부는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등에서 다뤄진 안보조건 도출 근거 및 정부부처의 정무적 판단근거 등이 논의되므로, 국외 반출 협의체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유출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외 반출 협의체의 회의록을 비공개로 구분·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국외 반출 협의체의 결정을 거쳐 반출 가능한 기본측량성과를 축척 2만5천분의 1 이하의 지도로 한정(안 제16조제5항)

지도의 종류를 국토지리정보원의 축척별 분류로 살펴보면, 축척이 10만분의 1 미만인 경우 소축척, 10만분의 1 이상~1만분의 1 미만인 경우 중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경우 대축척으로 구분됨.

축척 2만5천분의 1(이하 “1:25,000”이라 함) 지도는 지상 1km의 도상거리가 4cm^(지상 250m=도상거리 1cm), 축척 5천분의 1(이하 “1:5,000”이라 함) 지도는 지상 1km의 도상거리가 20cm^(지상 50m=도상거리 1cm)로 축소되며, 1:25,000 지도는 ‘국토계획, 토지이용, 산림개발, 환경보전, 관광, 지리정보의 이해’ 등에 활용되고, 1:5,000 지도는 1:25,000 지도의 활용 영역에 더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지역계획)’ 등에 활용이 가능함¹⁸⁾.

안 제16조제5항은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제2항 단서¹⁹⁾에 따라 국외 반출 협의체의 결정을 거쳐 국외로 반출하는 기본측량성과를 1:25,000 이하의 지도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제1항 단서²⁰⁾ 및 같은 법 시행령

18) 「지형도 도식적용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10조(지형도) ① 지형도는 지표 측량에 따른 지형지물, 이와 관련된 행정구역, 경계, 지명 등과 같은 필요 사항을 축척 등에 따라 표현한 지도를 말한다.

② 축척별 지형도의 성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지형도는 1:5,000 축척의 방식으로 국토의 지형지물을 표현한 지도로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지역계획), 토지이용, 환경보전,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대축척 지형도를 말한다.
2. 1:10,000 지형도는 1:5,000 지형도를 사진법에 의해 1/2축소 재편집한 것으로 그 내용은 축소 비율에 따라 최소한의 변경이 있을 뿐 상세 수준에 있어서 1:5,000 지형도와 동일하며, 보다 상세한 지리적 축척에서 국토 계획, 도시계획(지역계획), 토지이용, 환경보전,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지형도를 말한다.
3. 1:25,000 및 1:50,000 지형도는 국토계획, 토지이용, 산림개발, 환경보전, 관광,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지형도를 말한다.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

제16조제1항²¹⁾ 등에 따라 1:25,000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²²⁾를 거친 지도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없어도 국외 반출이 가능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1:10,000 이상의 지도, 특히 1:5,000 이상의 대축척지도²³⁾의 국외 반출여부는 국외 반출 협의체의 심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구글 또는 애플 등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1:5,000 지도의 국외 반출을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1:5,000 지도가 국외 반출되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본축량성과 및 공공축량성과의 국외 반출)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축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수치지형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도의 경우(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축척 2만5천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형도의 경우

2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보안성 검토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23) 「지형도 도식적용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10조(지형도) ② 축척별 지형도의 성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1:10,000 지형도**는 1:5,000 지형도를 사진법에 의해 1/2축소 재편집한 것으로 그 내용은 축소비율에 따라 최소한의 변경이 있을 뿐 상세 수준에 있어서 **1:5,000 지형도와 동일**하며, 보다 상세한 지리적 축척에서 국토 계획, 도시계획(지역계획), 토지이용, 환경보전,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지형도를 말한다.

1:5,000 지도의 경우 정밀도가 높은 지도로서,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위성정보 등과 결합되면 국내 주요 군사·안보시설 및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한 정교한 식별이 가능해지는 등 보안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및 지정학적 특수성 등 안보적 관점에 따라 1:5,000 지도의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1:5,000 지도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제작된 공공재적 성격이 있어 이를 외국 기업의 영리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 강화로 국내 공간정보산업 및 데이터산업 등의 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 향후 1:1,000 지도 및 정밀도로지도 등 고정밀 지도 데이터에 대한 반출 압력이 강화되고 이로써 이른바 ‘데이터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측면의 우려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밀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이 국가 안보 및 산업 생태계 등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한편, 개방성·연결성 등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기술 협력 필요성 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거주·관광 등 편의 증진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기본

측량성과 국외 반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

미국이 2025년 3월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Report)」²⁴⁾를 통해 지도를 포함한 위치정보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함에 따라 국외 반출 제한 시 통상 마찰이 발생할 우려 및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정밀지도 데이터 활용이 제약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의 도입 여부 및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1:5,000 이상 지도의 국외 반출을 국외 반출 협의체의 심사 대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안보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의 이행 요건 명시(안 제16조 제5항)

안 제16조제5항은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기본측량성과를 저장·관리하는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²⁵⁾)에 따른 데이터

24)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통칭 NTE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로 매년 3월 31일까지 미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되며, 미국 내 기업·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는 자료임.

2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센터(말함)를 국내에 설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²⁶⁾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우리나라의 기본측량성과(정밀지도)를 전세계 각국에 보유한 데이터 센터²⁷⁾로 이전·분산시키고 이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밀지도 데이터 등에 대한 복제·유통·처리 등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 물리적 시설 및 고정사업장 등을 보유하지 않고 기본측량성과, 즉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국외 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적 관할권이 확보되지 않아 이들 기업이 기본측량성과에 대한 국내 법령의 규제 및 조세 부담 등을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써 기본측량성과의 오남용 등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국방·안보시설의 노출 등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증대되며, 국내 공간정보 분야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6) 안 제16조제5항제2호는 보안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장 처리, 흐림 처리(블러), 저해상도 처리 등의 수정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7) 구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싱가포르, 일본, 대만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있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추가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블로터, “[구글, 지도 반출 압박]②한국 데이터센터 미설립 이유는 법인세 절감?”, 2025. 4. 22. 2025. 8. 14. 최종검색)

기업들에게만 규제·조세 부담이 적용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정부는 과거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하여 국가 안보 우려 최소화, 정부의 사후 통제와 법적 관할권 확보를 이유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전제로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외 반출을 신청한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해당 조건이 수용되지 않은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²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여부가 통상·관세 협상 등과 연계되는 경우 사후 통제와 법적 관할권 확보 등을 위한 정부의 협상력이 약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치하고 일정 보안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은,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위한 다각도의 요구에 대하여 법적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 등이 국내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이 국가안보

28) 뉴시스, ““지도 데이터 반출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의무화”...공간법 개정 추진”, 2025. 6. 18.

및 국내 산업 생태계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아울러, 데이터의 역외 이전에 따른 데이터 통제권 상실 우려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안보 차원에서 데이터 역외 이전을 금지하거나 자국 내 데이터 저장을 의무화하는 등의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²⁹⁾ 조치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한편,

미국의 경우 주요 교역 당사국과 체결한 FTA에 국경간 자유로운 정보 이전, 데이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도모³⁰⁾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정밀 지도데이터(1:5,000 이상 지도)의 보안 관리 및 국내

29) <데이터 현지화 조치>

구분	내용
유형	◦ 데이터의 국외 이전과 외국에서의 데이터 저장 및 처리를 허용하면서 데이터의 복사본에 대한 국내 저장을 요구하는 경우 ◦ 자국 내 복사본을 저장할 경우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조치이면서 데이터의 국외 이전 및 데이터 접근에 대한 명시적인 요건을 제시하는 경우 ◦ 자국 내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금지하고 국내에서의 저장 및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도입 목적	◦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부터 데이터 접근권 제한 ◦ 자국의 관할권 밖에서 보관되고 있는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외국 기업에 대하여 국내 시장에서의 활동과 경쟁력을 제한
현황	◦ (2017년) 35개국에서 67건의 데이터 이전 제한 조치 도입 ◦ (2020년) 62개국에서 144건의 데이터 이전 제한 조치 도입

※ 자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이효영), 「데이터 안보와 국제통상: 현안과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 2024-14(2024. 7. 3.)를 바탕으로 재작성

30)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24 외국의 통상환경(2권)_분야별 보고서」, 2025. 7. 4.

기업과의 규제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국내 중심의 데이터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

1:25,000 지도 등의 경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16조³¹⁾에 따라 일정 조건 하에서 국외 반출이 이미 허용되고 있는바, 1:25,000 이하 지도 국외 반출시 데이터센터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제 확대로 기존 공개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보안관리 차원의 국내 데이터센터 운영은 보안조치의 일환이므로 안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통합하여 보안조치 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표 3〉 국토교통부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제></u>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수치지형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도의 경우(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축척 2만5천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형도의 경우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u>자격기준</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략)	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국외로 반출하는 기본측량성과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하의 지도로 한정하고,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본측량성과를 저장·관리하는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를 국내에 설치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의 이행을 완료할 것 ⑥ ----- ----- -----자격기준, 제4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에----- -----.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받으려는 자는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문의처
02)6788-5578